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제회의산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책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근거 마련 〉

■ 최혁진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40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제회의산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책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최혁진의원·민형배의원 등 18인

나. 제 출 일: 2025. 12. 3.

다. 회 부 일: 2025.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회의산업에 관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책무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본계획 등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연대와 협력,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과의 협력 체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책무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진흥하여 국민경제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

Ⅲ. 검토의견

1. 국제회의산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책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근거 마련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①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추가하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회의의 기획·유치 및 운영과정에서 사회적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협력·참여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u><신설></u>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회의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신 설>

② (생 략)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의 기획·유치 및 운영과정에서 환경보전, 포용성, 인권,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를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력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

1. ~ 6. (생략) <u><신설></u> <u><신설></u> 7. (생략) ② ~ ⑤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국제회의의 기획·운영과정에서 환경보전, 포용성, 인권,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u> 8. <u>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u>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국제회의산업은 국제회의의 유치·유지와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관광산업과 국민경제 향상 등에 기여하도록 육성하는 MICE¹⁾ 중심의 산업²⁾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컨벤션 유치·개최, 해외마켓 참가, 지역MICE 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음.

1) Meetings(회의), Incentives Travel(포상여행), Conventions(컨벤션), Exhibitions/Events(전시/이벤트)

2)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진행하는 'MICE산업통계조사'와 'MICE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는 1,900건, 참가인원 1,680,786명(외국인 참가자 수 418,979명), 생산유발효과 약 2조 9,625억원 규모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 8. (생략)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치에는 국제회의 참가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5. 국제회의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제회의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② ~ ⑤ (생략)

이를 위하여 현행법은 국가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 참가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확충, 개선 등을 위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제회의산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및 지원,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한 부담금 감면, 국제회의복합지구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적용 등에 한정된 것으로서³⁾, 지역에서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이나 진흥에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회의산업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제회의시설을 보유·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의4(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회의복합지구의 국제회의시설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5.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회의복합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환경, 인권, 공정 등의 사회적 가치가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참여 촉진 노력을 규정하고, ② 국제회의 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회의의 기획·운영과정에서 환경보전, 포용성, 인권,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제회의산업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할 경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국제회의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국제회의산업 육성 관련 조례 예시]

지방자치단체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경상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다만, 국제회의의 기획·유치 및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협력과 참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도록 규정한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성격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동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아우르는 것으로, 취약계층이나 지역사회 공동체(조합원, 주민 등)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조직이며,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국제회의산업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조직이 참여하는 경우 국제회의의 원활한 운영이 곤란해질 수 있고, 행사의 관리·운영 체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사회연대경제 조직]

구분	근거 법률	내 용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마을기업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자활기업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삭제<2021.7.27.>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함께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⁴⁾, 국제회의 유치·개최 관련 환경보전,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해 국제회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등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임.

다만, ①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익에 그 목적이 있어 동법의 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② 국제회의는 전문성 및 표준 운영체계, 유치 경쟁력 등이 중요한 산업이므로 명확한 참여기준과 전문성 없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참여할 경우 사업의 안정성 및 행사 품질 등이 저하될 수 있으며, ③ 정부의 공모사업(공모지침, 평가 등) 선정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가점, 우대 등 방식으로 참여를 의무화할 가능성이 높아, 기존 MICE 업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등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함.

한국PCO협회⁵⁾ 및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은 국제회의의 기획유치 및 운영 과정에서 환경보전, 포용성, 인권,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국제회의산업에서 국내외로 ESG, DEI⁶⁾의 실천이 보편화되어 있고 이를 법에 명시할 경우 국내 국제회의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연대경

4) 한국MICE협회도 동일한 의견임.

5) The Kore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6) Diversity, Equity, 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제 조직과의 협력이 필수요소로 적용될 경우 국제회의 본연의 목적 달성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한국마이스관광학회는 마이스 산업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역량, 책임체계 등이 일치하지 않고 의사결정 기준이 다르므로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전문역량 및 표준운영체계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 PCO, 전시·이벤트 사업자 중심의 기획·유치·운영 체계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77